근로소득자를 위한
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
작성방법 안내

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

국세청 원천세과

URL www.hometax.go.kr (검색창에 '홈택스' 검색)

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➔ 종합소득세 신고 ➔ 근로소득 신고 ➔ 정기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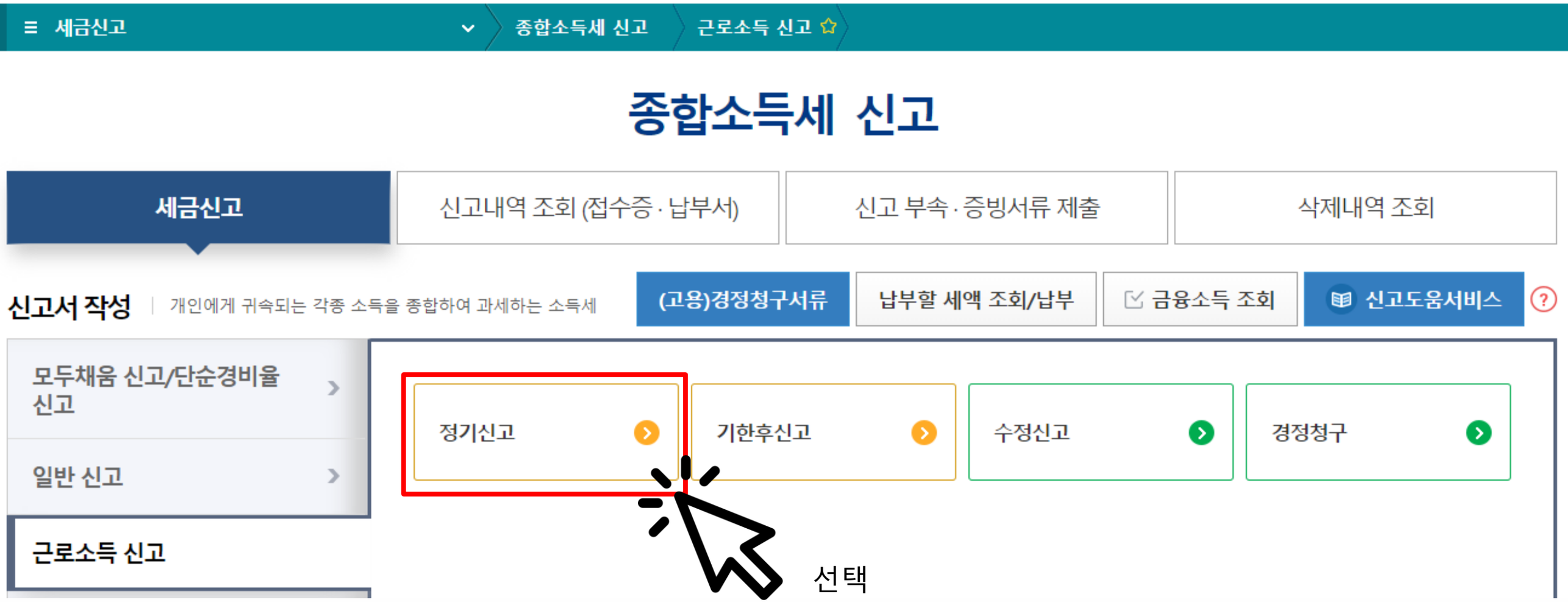

1.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

2.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확인 후 정정사항이 있는 지급명세서의 급여선택 및 공제선택에 체크

   2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 모두 선택

   공제내역은 공제선택에 체크한 지급명세서의 공제내역을 불러옴

3. '휴대전화'와 '주소지전화' 중 하나 입력 필수

4. 세대주가 아닌 경우 '세대주 여부'를 Y→N로 변경

   거주구분(거주자or비거주자 여부), 내·외국인 여부, 거주지국 확인 후

5. 클릭하여 다음화면 이동

테*** 님 | 800101-*******

제출여부 ▸▸▸▸ 작성중입니다.

근로소득신고서 입력

▪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「신고서 작성완료」를 클릭하세요.

근무지별 소득명세

※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야 할 경우 「입력/수정하기」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급여 등 소득을 작성하고 아래 <(21)총급여> 항목에 급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근무처별 소득공제 도움말 | 입력/수정하기 ❶

※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「입력/수정하기」를 클릭하세요.

NO	근무처명	사업자등록번호	급여	상여	인정상여 등	계
1		124-37-97934	75,000,000	5,000,000	0	80,000,000

21. 총급여	80,000,000	22. 근로소득공제	13,750,000	23. 근로소득금액	66,250,000

인적공제 명세

※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「입력/수정하기」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
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| 입력/수정하기 ❷

24. 본인		1,500,000	28. 장애인	0 명	0
25. 배우자		0	29. 부녀자		0
26. 부양가족	1 명	1,500,000	30. 한부모가족		0
27. 경로우대	1 명	1,000,000	소계		4,000,000

❶ 클릭 시 근무지별 소득명세 팝업 (슬라이드 5)

앞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불러온 근무처별 급여, 상여, 인정상여 등 내역과 기납부세액에서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클릭 불필요

❷ 클릭 시 인적공제 명세 팝업 (슬라이드 6)

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세나 추가공제 대상 여부(장애인·경로우대 ·부녀자 ·한부모가족)에서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클릭 불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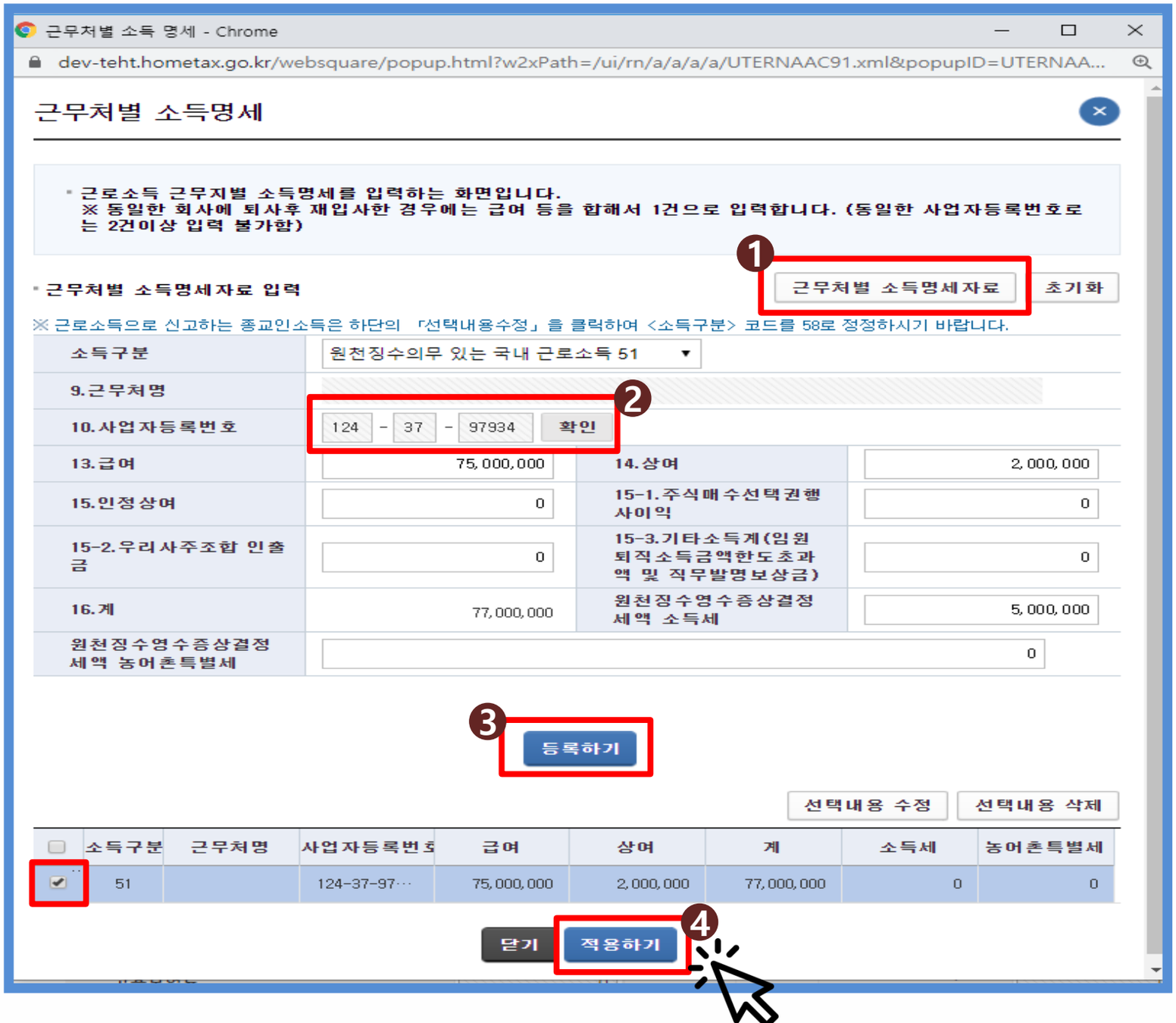

1. 클릭 시 근무처(회사)별로 제출한 지급명세서 명세 확인 가능

  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 중 정정이 필요한 건을 선택

2. 사업자 번호 확인버튼 클릭 후 급여, 상여, 인정상여 등 금액,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소득세(기납부세액) 수정 필요시 수정하고자 하는 금액 입력

3. 등록 후 적용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 건은 체크를 선택한 다음

4. 적용하기 클릭

1.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

2. 입력한 부양가족과 신고자 간의 관계 선택
   *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

3. 추가공제 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

4. 입력내용 등록 후 완료 시

5. 클릭하여 공제·감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

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

(단위:원)

구분	금액	구분		금액
31.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도움말	5,400,000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	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~14년	0
32. 공무원연금	0		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~29년	120,000
군인연금	0		차입금 이자상환액 30년 이상	120,000
사립학교교직원연금	0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(15년이상)	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,비거치식대출	0
별정우체국연금	0		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	0
33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 ① 계산하기	500,000	장기주택 저당차입 금이자상 환액 2015년 이후 차입분	10년~14년 고정금리이거나, 비거치상환대출	0
고용보험료	120,000		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, 비거치상환대출	0
34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② 계산하기	192,000		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, 비거치상환대출	120,000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	0		그 밖의 대출	0
		35. 기부금(이월분)		0
		36. 특별소득공제 계(33+ ~+ 35)		1,172,000
		37. 차감소득금액		55,678,000

①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 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 (슬라이드 8의 팝업 이동)

②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하여 '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' 또는 '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' 소득공제를 수정할 경우 클릭 (슬라이드 9의 팝업 이동)

그 외 항목은
정정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의 금액을
직접 입력하여 수정

1.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전체선택 버튼 클릭

  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
   선택해제 클릭 후
  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
   불러오기 클릭

2. 간소화 자료로 제출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해당하는 달에 납입한 금액 확인 가능

 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

3. 계산하기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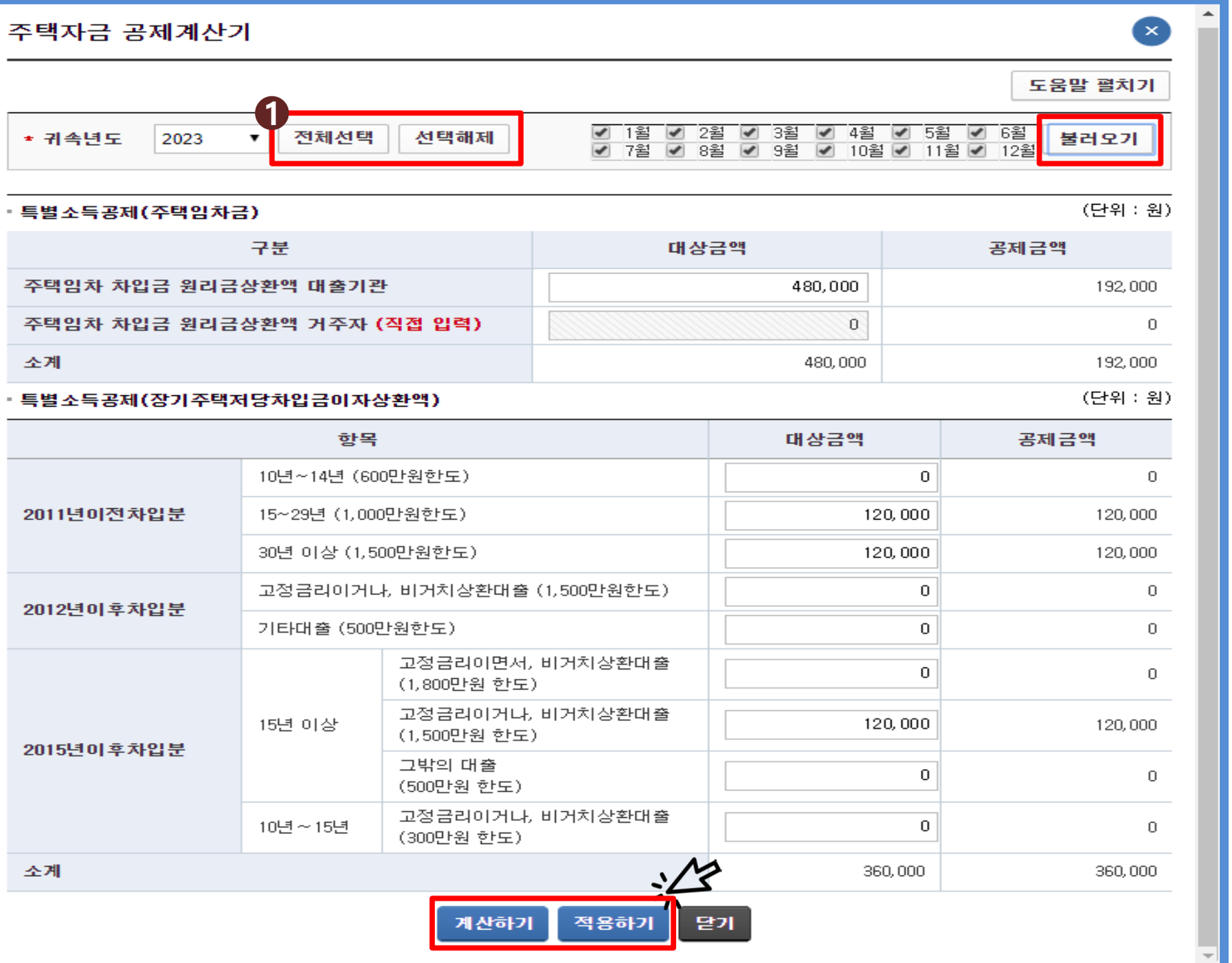

1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**전체선택** 버튼 클릭

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
선택해제 클릭 후
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
불러오기 클릭

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불러와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직접 입력 필요(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음)

2 금액 확인 후 하단의 **계산하기**를 클릭하여 계산된 공제금액 확인 후
적용하기를 클릭하면
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
그 밖의 소득공제

(단위:원)

구분	금액	구분	금액
38. 개인연금저축(2000.12.31. 이전 가입)	0	42.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① 계산하기	0
39.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	0	43.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도움말	0
40. 주택마련저축 계산하기 도움말	0	44.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도움말	0
청약저축	0	45.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	0
주택청약종합저축	0	46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0
근로자주택마련저축	0	47. 그 밖의 소득공제 계	0
41. 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도움말 / 투자조합출자	0		
41. 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도움말 / 벤처기업투자	0		
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

(단위:원)

구분	금액
48.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도움말	0
49. 종합소득 과세표준	55,678,000
50. 산출세액	7,602,720

세액감면 도움말

(단위:원)

구분	금액	구분	금액
51. 소득세법상 세액감면(제59조의 5)	0	54. 조세조약(원어민교사 등)	0
52.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(제18조 외)	0	55. 세액감면 계	0
53.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(제30조)	0		

① 간소화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클릭

그 외 공제나 감면 항목은
정정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의 금액을
직접 입력하여 수정

- **40. 주택마련저축**과 **41.투자조합출자** 등 소득공제는 **계산하기** 버튼을 이용해 팝업창에서 금액 입력 가능
- **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**을 적용하려는 경우 **53. 칸**에 감면세액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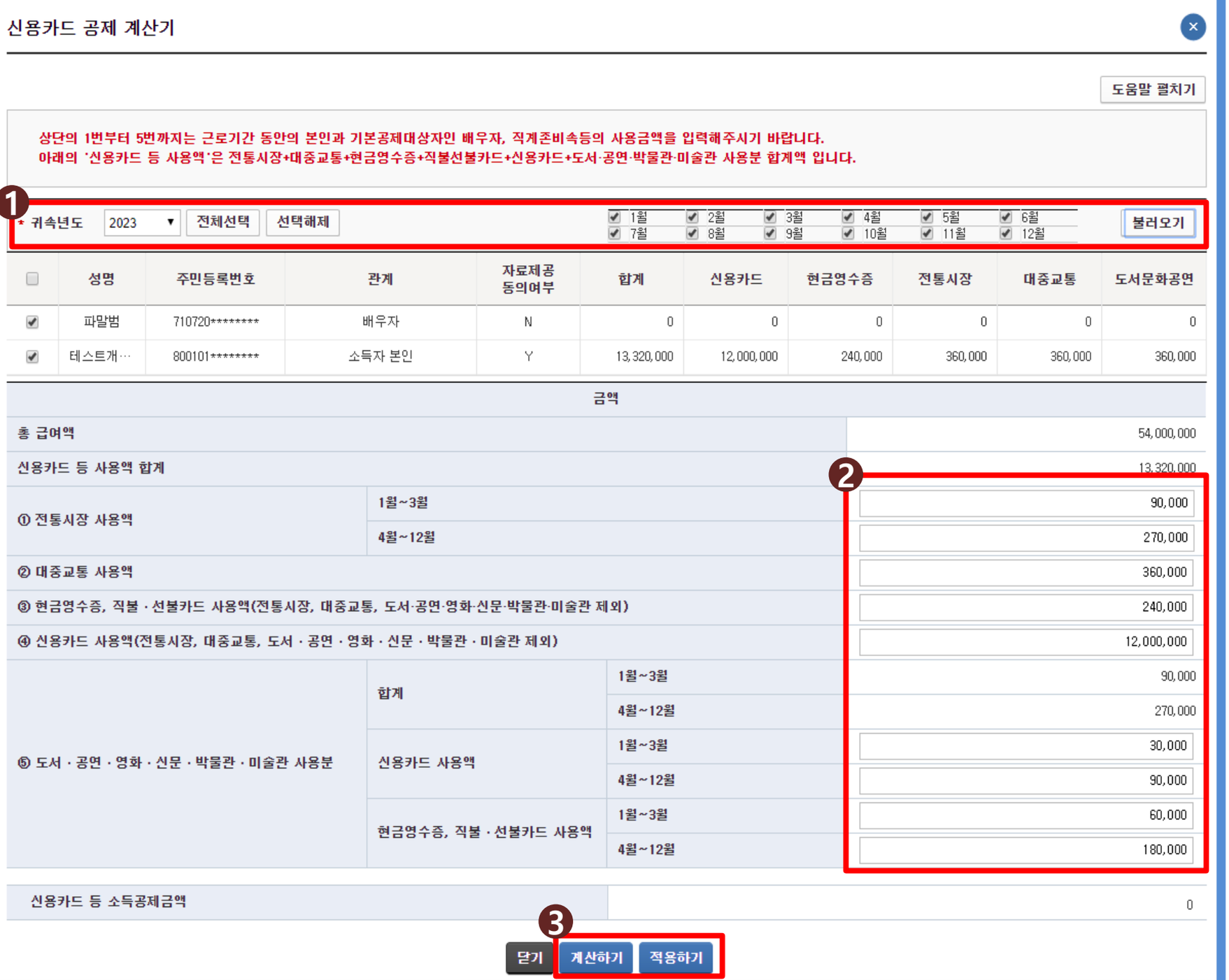

1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**전체선택** 버튼 클릭

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
선택해제 클릭 후
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
불러오기 클릭

간소화 자료로 제출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 가능

2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수정이 필요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입력

3 **계산하기**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**적용하기**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
세액공제

(단위:원)

※ 전자신고세액공제 : 「소득세법」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.

구분	공제대상금액	금액	구분	공제대상금액	금액
56. 근로소득		500,000	64. 기부금 계		594,318
57. 공제대상자녀 도움말	명	0	기부금조정명세서		
출산·입양자	□ 첫째 □ 둘째 □ 셋째이상 명	0	64-1. 정치자금 기부금 (10만원이하)	100,000	90,909
			64-2. 정치자금 기부금 (10만원초과)	400,000	60,000
			64-3. 고향사랑기부금 (10만원 이하)	100,000	90,909
연금계좌 계산하기	784,000	94,080	64-4. 고향사랑기부금 (10만원 초과)	0	0
58.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에 따른 퇴직연금	141,000	16,920	64-5.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	2,000,000	300,000
59.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	233,000	27,960	64-6. 우리사주조합기부금	0	0
60. 연금저축	365,000	43,800	64-7.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	350,000	52,500
60-1.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	45,000	5,400	65. 특별세액공제 계(61+ ~ + 64)	39,774,600	6,114,408
61. 보험료 계산하기	120,000	14,400	66. 표준세액공제 도움말		0
일반 보장성	120,000	14,400	67. 납세조합공제		0
장애인 전용 보장성	0	0	68. 주택차입금 도움말		0
62. 의료비 계산하기	32,480,000	4,872,000	69. 외국납부 도움말		0
63. 교육비 계산하기	4,224,600	633,690	70. 월세액 세액공제 도움말	0	0
			전자신고세액공제		10,000
			71. 세액공제 계		6,718,488

❶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(8세 이상~20세 미만)가 있는 경우 입력

'23년 중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출산(입양)자녀가 첫째/둘째/셋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체크

❷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
(슬라이드 13의 팝업 이동)

❸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보험료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
(슬라이드 14의 팝업 이동)

❹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
(슬라이드 15의 팝업 이동)

❺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
(슬라이드 16의 팝업 이동)

❻ 간소화자료 등을 이용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클릭
(슬라이드 17의 팝업 이동)

❼ 그 외 공제나 감면 항목은 정정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

- **70. 월세액 세액공제**는 공제대상 금액 입력 시 세액공제 금액 자동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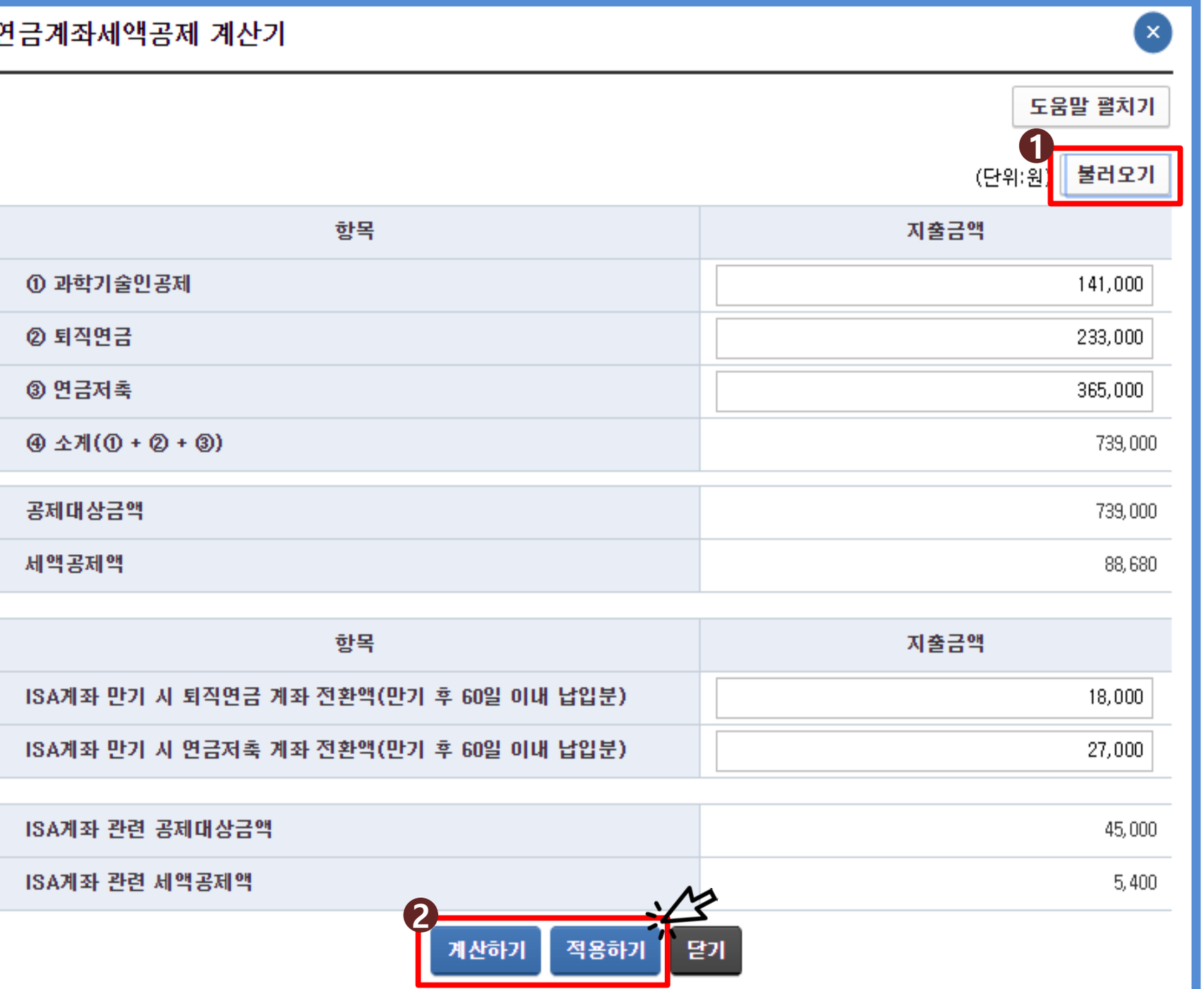

1 간소화자료로 제출된 퇴직연금계좌· 연금계좌 납입금액과

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에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확인 가능

2 **계산하기**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**적용하기**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
1.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**전체선택** 버튼 클릭

   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
   선택해제 클릭 후
  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
   불러오기 클릭

2. 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된 일반·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및 수정 가능

3. **계산하기**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**적용하기**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
1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**전체선택** 버튼 클릭

근로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**선택해제** 클릭 후 근로를 제공한 달에만 체크한 다음 **불러오기** 클릭

2 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된 의료비와 실손의료 보험금 금액을 불러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되지 않은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정입력 가능

3 **계산하기**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**적용하기**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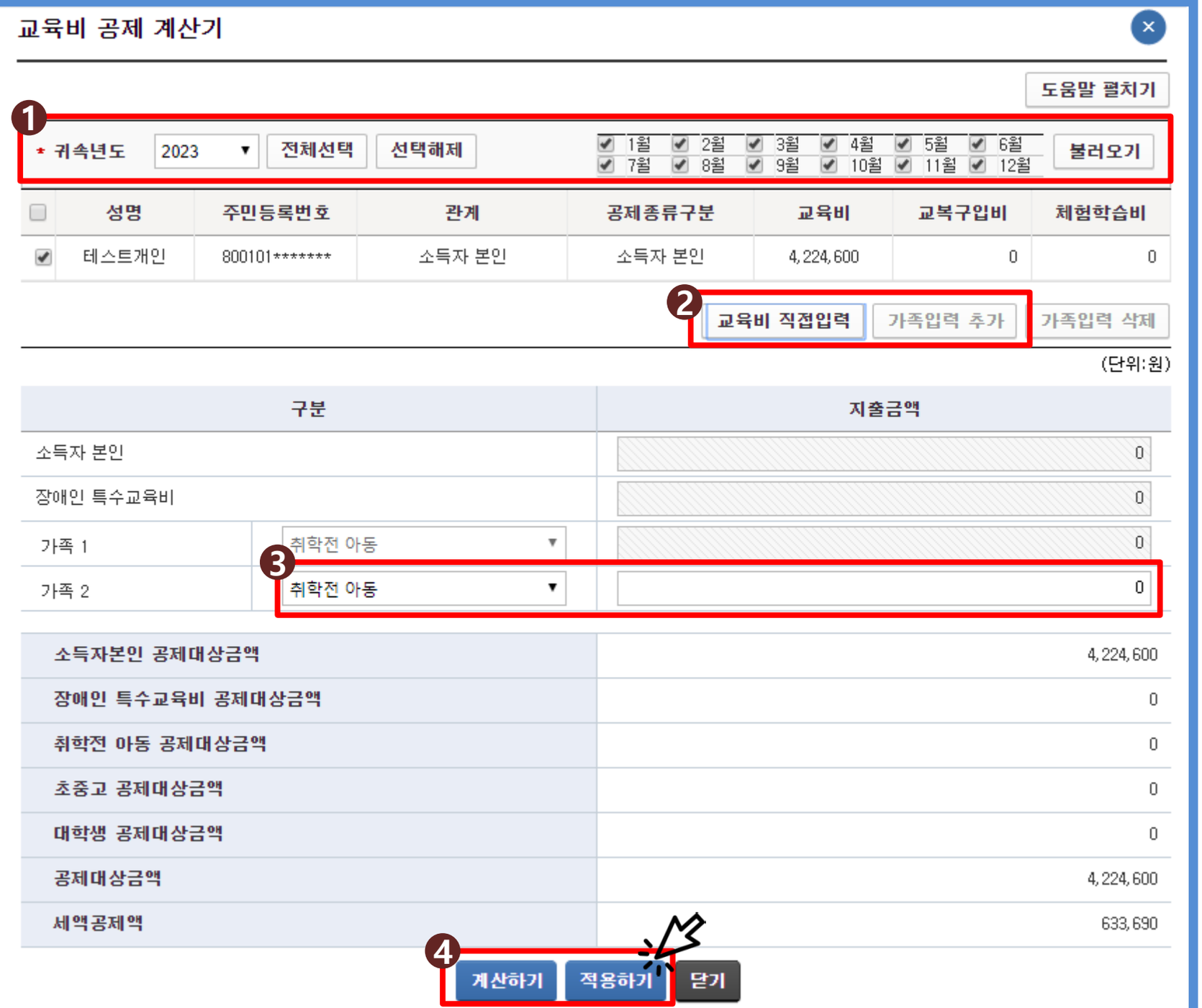

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 **전체선택** 버튼 클릭

(하단의 **계산하기** 버튼 불필요, **적용하기**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화면 바로 이동)

간소화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려는 경우 **교육비 직접입력** 클릭

- 입력 인원 추가/삭제가 필요한 경우 가족 입력 추가/삭제 버튼 이용

교육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해당되는 학생 신분을 선택하고 지출한 교육비 금액 입력

1. 취학전 아동 } 1인당 3백만원 한도
2. 초·중·고등학생 }
3. 대학생 ——— 1인당 9백만원 한도

- 학생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선택

4 **계산하기** 버튼으로 소득공제액 확인 후 **적용하기**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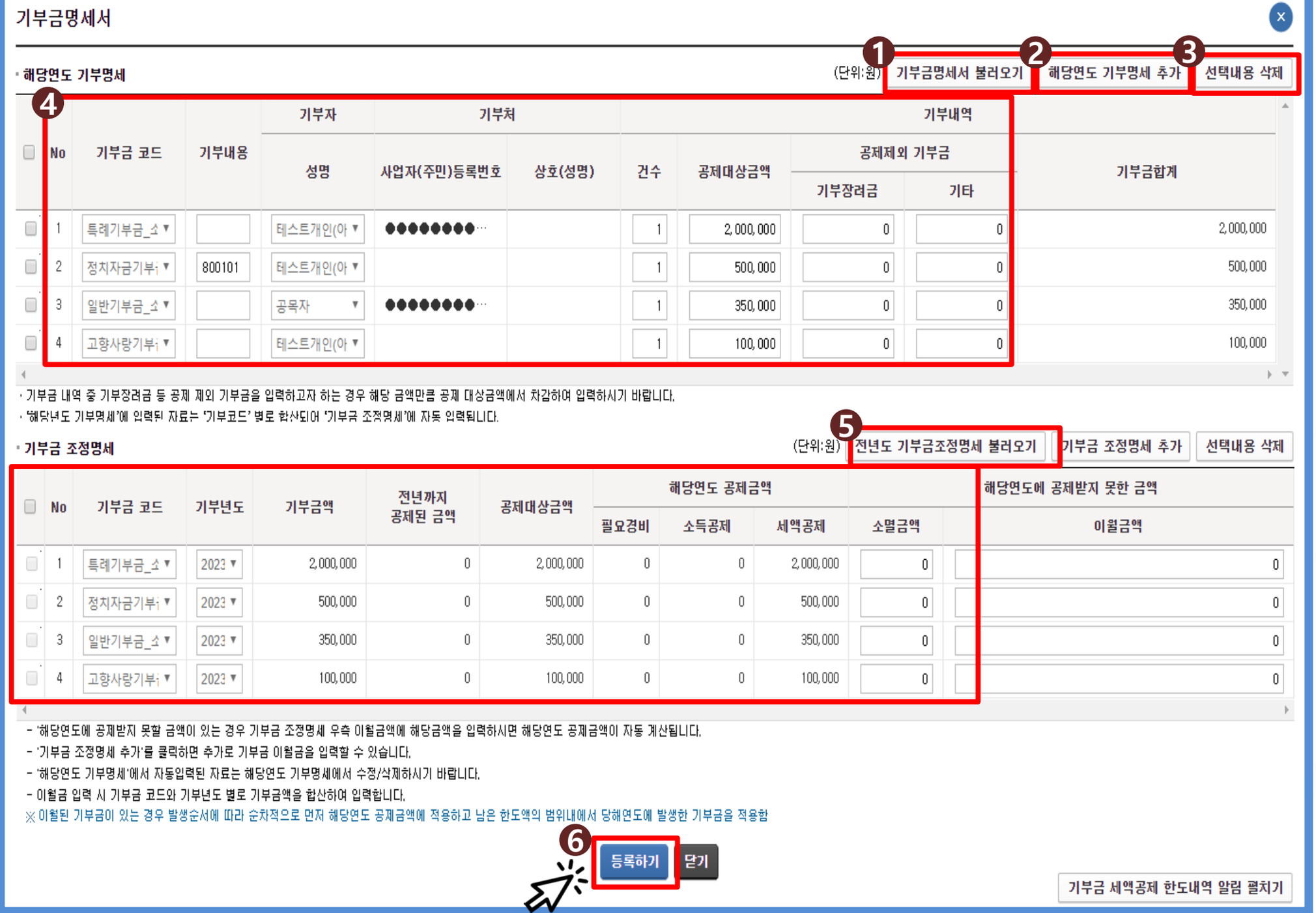

1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내역 불러오기

2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않은 기부내역 추가 입력

3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기부금 중 **공제대상이 아닌 기부금**이 있는 경우 **해당연도 기부명세**에서 항목 체크하고 **선택내용 삭제** 클릭

4 기부금 코드 및 기부자 적정여부, 기부처 사업자 등록번호·상호 공제대상 및 공제제외금액 적정 기재여부 확인

5 '23년 이전 기부한 금액 중 '23년도 신고시 (이월)공제 받을 금액 확인 및 불러오기

기부년도가 '23년 이전인 기부금은 '23년 귀속 신고 이전 공제된 금액(전년까지 공제된 금액) 입력 시 '23년 공제대상 금액 자동 계산

6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 이동

납부(환급)세액

※ 아래의 '75.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'은 당해화면 상단 근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 [입력/수정하기] 클릭후 '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' 항목에서 입력합니다.
※ **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**해야합니다.
(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)

구분	소득세	농어촌특별세
72. 결정세액(50-55-71)	884,232	0
73.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	2,700,000	0
74. 차감납부할 세액(72-73)	-1,815,768	0
75. 납부특례세액차감	0	
납부특례세액가산	0	
76. 분납할세액(2개월 이내)	0	0
77. 신고기한내 납부세액	-1,815,768	0

위 내용을 **충분히 검토**하였고 **사실 그대로 작성**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**환급세액을 많이 신고**한 경우 **가산세 부과 대상**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※ 소득세 신고 법령 : 「소득세법」 제70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
가산세 부과 법령 :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 3

☑ **이에 동의합니다.**

환급받을 계좌

- **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.**
  (CAM 등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 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  (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-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적정여부 검토후 6월말~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
 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금융기관/체신관서명	은행
계좌번호	10051112222222

이전 | **제출화면으로 이동**

1. 신고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가 환급세액(음수) 금액 확인 후
2. 신고한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경우 체크
   * 체크하지 않을 경우 다음 화면 이동 불가
3.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
  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은행/ 계좌번호 입력
   * 오류입력 시 환급 불가
   **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환급 불가
4. 유의사항 확인 후
   클릭 시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

1 '상세내역 펴기'를 클릭하면
아래와 같이 종합소득금액, 과세표준, 산출세액 등
신고한 내역 확인 가능 (음영 표시한 부분)

2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의 10%) 신고납부와 관련하여
신고서의 전화번호·환급계좌번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
제공하는 데 동의할 경우 체크

3 클릭 시 신고서 제출 완료되며
접수증 확인·납부서 출력 가능

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

Hometax 국세청홈택스

사용자 ID	xnts_user111	사용자명	테****		
접수번호	101-2024-2-600001264596	접수일시	2024-04-26 11:36:38	접수결과	정상

▪ 제출내역

상호(성명)	테****	사업자(주민)등록번호	800101-*******
신고서종류	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	접수방법	인터넷(작성)
첨부한서류	5종	신고구분	정기(확정) / 정기신고

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.

1 ☑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

▪ 상세내역 (단위 : 원)

과세연월	2023년 01월	농어촌특별세 납부(환급)할세액	0
종합소득세 과세표준	55,678,000	농어촌특별세 분납할세액	0
종합소득세 납부(환급)할 세액	884,232	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	0
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	0	농어촌특별세 충당후 납부세액	0
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	884,232	종합소득세 충당후 납부(환급)세액	884,230

※ (중요)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(주의)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**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**한 것으로 봅니다.
※ (확인)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**모든 책임은 본인**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(안내)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, '종합소득세' 첫화면에서 **[신고 부속 · 증빙서류 제출]**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※ (안내) 종합소득세 정기신고(5월신고분)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.
※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항은 주소지 시·군·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(안내) 개인지방소득세 신고(경정청구는 제외)를 위해 「신고내역 조회 (접수증 · 납부서)」 또는 「전자신고결과조회」 화면에서 「지방소득세 신고」 버튼을 클릭하세요.
※ 귀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. 성실납세 우대제도(세금포인트 제도, 모범납세자 제도)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* 국세청 홈페이지 > 납세자권익24 > 성실납세우대 > 세금포인트·모범납세자
※ (안내)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 체납된 세금에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.

2 ☐ 확인하였습니다.

인쇄하기 | 신고내역 조회 (접수증) | 납부하기 | 납부서 조회(가상계좌확인) | 송달장소 (변경)신고 | 증빙서류 제출

닫기

1 체크하여 아래 상세내역(과세연월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, 납부(환급)세액 등 확인

2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하면
하단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서 접수증 및 납부서 출력가능

감사합니다.

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

국세청 원천세과